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권기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914
----------	------

발의년월일 : 2024.02.23.

발의의원 : 권기훈, 김재용,
박소영, 박종필,
박창석, 손한국,
육정미, 이성오,
이재숙, 조경구
의원(10명)

1. 제정 이유

대구를 대표하는 상징물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상징물의 종류, 관리 및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구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 명시(안 제2조·제3조)

나. 상징물의 변경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등의 제작 및 행사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법 규정(안 제7조)

마. 상징물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면제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바. 상징물사용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시조(市鳥): 독수리
4. 시목(市木): 전나무
5. 시화(市花): 목련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에 따라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징물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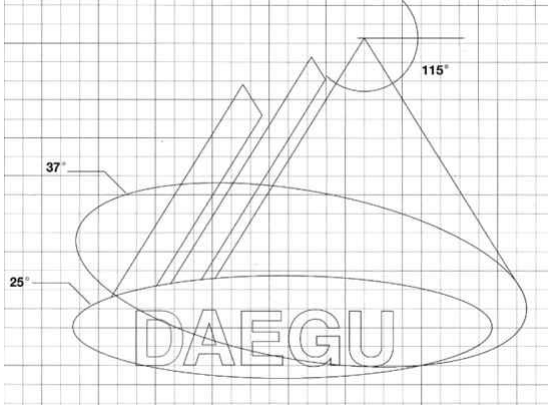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호 관련)

1. 형태

기본형	작도형
	

2. 의미: 삼각형과 타원을 기본 도형으로 하여 대구를 에워싸고 있는 팔공산과 낙동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대구의 자연환경을 상징적으로 조형화함

3. 색상: 심벌마크의 색상표현은 흰바탕에 대구청색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적용매체의 특수상황에 따라 아래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대구청색(DAEGU Blue) 
- ② 대구녹색(DAEGU Green) 
- ③ 대구금색(DAEGU Gold) 
- ④ 대구은색(DAEGU Silver) 
- ⑤ 대구회색(DAEGU Gray) 
- ⑥ 대구검정색(DAEGU Black)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1. 캐릭터명: 패션이

2. 형태



3. 의미: 대구를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아가자 하는 의지를 담아 전통적인 비천상 문양을 바탕으로 단아하고 친근감 있는 한국 여인상의 이미지에 서양적인 패션 이미지를 조화롭게 표현

4. 색상



M90 Y100



M20 Y100



M10 Y20



C15 M100 Y100



C50 M100→0



K100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상징물사용 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회사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		
첨부자료	상징물사용 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 (제7조제2항 관련)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회사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		
첨부자료	상징물사용 변경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의6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 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31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1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text{사용료등} = \text{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times \text{제품의 판매단가} \times \text{점유율} \times \text{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3.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저작권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사용료등 =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 - 저작권공유자의 지분 비율)
- 비고: 저작권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품중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품중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중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